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목 차

1.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1
1-1 주요 재정지표	3
1-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3
1-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7
2. 계속비 사업설명서	9
3. 직종별 정원표	27
4. 용역심의위원회 결과	31
5.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35
6.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41
7.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	43

1.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1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1-1 주요 재정지표

(단위 : %)

구분	지표별	회 계	2024년			2023년	산 식
			2추경	1추경	당초		
세 입	재정자립도	일반	55.31	57.02	57.55	57.21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재정자주도	일반	63.82	65.08	65.81	63.54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세 출	사회복지 비중	일반·특별	28.75	29.08	27.85	27.48	$\frac{\text{사회복지 분야 예산}}{\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자체사업 비중	일반·특별	38.0	43.10	40.20	39.10	$\frac{\text{자체사업 예산}}{\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보조사업 비중	일반·특별	37.21	35.33	35.01	37.41	$\frac{\text{보조사업 예산}}{\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행정운영경비 비중	일반·특별	12.45	12.83	13.53	12.03	$\frac{\text{행정운영경비 예산}}{\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예비비 확보율	일반·특별	0.40	0.41	0.59	0.62	$\frac{\text{예비비}}{\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세입·세출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교	일반	16.68	18.89	17.44	14.92	$\frac{\text{인건비}}{\text{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times 100$

1-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합 계		의무지출*		재량지출	
		* 법정, 보조, 이자의무 지출			
금 액(a)	비 율	금 액(b)	비 율(b/a)	금 액(c)	비 율(c/a)
63,706,912	100.0%	42,981,950	67.5%	20,724,962	32.5%

□ 의무지출 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소 계	법령근거	구속성이 강한지출		
42,981,950	23,331,257	17,843,675	5,487,582	14,005,773	5,644,920

□ 법령근거가 있는 지출

(단위 : 천원)

유 형		통계목	사업 예시	금액
합 계 (①+②+③+④)				17,843,675
① 소 계				15,294,823
법정 전출금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703-01	·교육청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1,500
		703-02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4조)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의료급여기금전출금(의료급여법제25조) 등	5,812,999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주차장법, 재산세 징수액 중 일부) 등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부담금	304-01	·지자체가시행자인경우의도시개발사업비용부담 (도시개발법 제54조)	9,480,324
		304-02		
		304-03	·지자체가시행자인경우의산업단지개발비용부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308-07	·선거비용보전에따른부담금(공직선거법제122조의2)	
		308-13	·지방직영기업손실부담금(지방공기업법제14조) ※ 자치단체간부담금(222-01), 부담금(236-01) 수입과 연계된 세출예산은 법령의무 지출임.	
		310-02		
	기금 전출금	702-01	·재난관리기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제15조) 등	-
② 소 계				-
법정 교부금	조정 교부금	308-03	·자치구조정교부금(지방재정법제29조의2)	-
		308-04	·시·군조정교부금(지방재정법제29조)	
	징수 교부금	308-02	·시도세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③ 소 계				2,965,427
손실보상, 수당 등		307-09중	·버스노선손실보상 등(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2,965,427
		-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308-13 등	·누리과정경비(유아교육법제24조)	
		101-01	·지방공무원봉급(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8조)	
		101-02		
		101-03		
④ 소 계				△416,575
기타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367,375
		701-02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49,200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

□ 구속성이 강한 지출

(단위 : 천원)

유 형	통계목	내 용	금 액
합 계 (①+②+③)			5,487,582
① 소 계			5,353,514
행정운영을위한 기본성격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2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21
	204-01	·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	△2,500
	204-03	·특정업무경비	4,300
	201-01중	·일·숙직비	-
	201-02중	·공공요금 및 제세	4,647,320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2,830
	202-02	·월액여비	-
	301-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688,341
	307-07	·연금지급금	-
② 소 계			120,000
의회관련 경비	205-01	·의정활동비	120,000
	205-04	·의원국외여비	-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
	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③ 소 계			14,068
기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의회비	14,068

□ 이자지출

(단위 : 천원)

유 형	통계목	내 용	금 액
합 계			5,644,920
지방채및예수금 이자상환	307-08	이차보전금	-
	31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 상환	-
	311-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 상환	-
	311-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상환	△13,758
	311-04	지방채증권이자 상환	-
	311-05	기타차입금이자 상환	-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5,812,999
	705-02	예수금이자 상환	△154,321
	705-04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

1-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2021년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_FY202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20	FY 2021	FY 2022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82%	-0.34%	-4.90%	-0.60%	5.26%
	2. 경상수지비율	73.01%	73.65%	78.23%	66.36%	64.62%
	3. 관리채무비율	11.56%	13.08%	13.32%	17.39%	6.93%
	관리채무증감률	-	33.14%	-0.92%	2.36%	5.13%
	4. 관리채무상환비율	3.48%	0.74%	3.85%	5.17%	2.14%
	5. 통합유동부채비율	12.06%	27.41%	32.03%	41.19%	22.23%
Ⅱ. 재정여유성	6. 공기업부채비율	2.18%	7.61%	11.13%	42.79%	36.00%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수입)	43.63%	43.20%	41.80%	46.19%	24.49%
	지방세수입 증감률	19.94%	12.66%	-3.46%	2.29%	5.46%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4.45%	3.96%	3.85%	3.66%	3.73%
	세외수입 증감률	8.34%	1.20%	-2.98%	22.82%	4.68%
	8. 지방세징수율	98.51%	98.30%	97.58%	97.94%	97.97%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34	0.9979	0.9927	0.9957	0.9974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수입)	1.39%	1.28%	1.56%	1.83%	0.95%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4.85%	5.12%	21.54%	18.53%	9.62%
	9-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0.51%	0.47%	0.56%	0.20%	0.76%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0.13%	4.29%	19.43%	-9.23%	9.71%
	10. 지방보조금비율	6.28%	6.27%	6.86%	2.03%	5.51%
	지방보조금 증감률	4.88%	22.30%	13.91%	11.23%	10.38%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5.75%	5.10%	5.19%	3.85%	2.3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26.29%	14.56%	5.55%	2.06%	3.30%
	12. 자체경비비율	8.93%	11.62%	11.79%	3.56%	9.61%
	자체경비 증감률	3.65%	45.21%	-1.96%	9.85%	8.74%
Ⅲ. 재정계획성	12. 세수오차비율	84.35%	84.54%	96.10%	91.02%	92.87%
	세수오차비율개선도	-	1.002	1.137	1.111	1.084
	13. 이불용액비율	14.22%	5.46%	3.82%	3.98%	5.32%

2. 계속비 사업설명서

2

계속비 사업설명서

1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사업(계속)

예산안 : 454쪽, 담당자 : 박철순

균형개발팀장 임현수 (☎300-2731)

1 편성요구액

(단위:천원)

편 성 목 (통계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2025년 이 후
					계	기정액	추경편성	
계	예산액	4,665,000	2,216,100	3,060,000	1,040,000	830,000	210,000	2,608,900
	지출액	694,239	566,516	650,777	-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3,000	5,900	5,000	-	-	-	-
	지출액	2,270	740	-	-	-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예산액	360,000	420,000	430,000	-	-	-	770,000
	지출액	264,700	294,276	353,076	-	-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	-	-	10,000	-	10,000	40,000
	지출액	-	-	-	-	-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예산액	-	-	-	-	-	-	44,000
	지출액	-	-	-	-	-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액	200,000	200,000	-	-	-	-	-
	지출액	200,000	200,000	-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액	4,055,000	1,177,200	2,550,000	900,000	700,000	200,000	1,601,900
	지출액	226,339	71,500	271,416	-	-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예산액	35,000	323,000	50,000	-	-	-	53,000
	지출액	-	-	15,000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예산액	12,000	-	5,000	-	-	-	-
	지출액	930	-	2,200	-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	-	20,000	130,000	130,000	-	100,000
	지출액	-	-	9,085	-	-		

② 편성사유

① 사업개요

- 사업구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내용 : 부강면의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핵심 거점 조성
 - (HW) 부강행복돌봄센터, 부강마실공방 및 안전보행로 조성 등
 - (SW)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인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 사업기간 : 2020.1.1 ~ 2025.12.31
- 사업비 : 1,040,000천원(시비 100%) ※ 시비 매칭비 미확보분
 ※ 총사업비 : 157.5억원(국비 75억, 시비 75억, 지방채 7.5억)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전절차이행여부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승인	지방보조금	연구용역	행사축제	민간위탁	출자·출연금
대상/비대상	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미반영	반영	반영	해당없음	반영	해당없음	반영	반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기재정 수요전망 (단위 : 천원)]

- ('24) 1,040,000 ('25) 2,608,900 ('26) - ('27) - ('28)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당해연도	'25	'26	'27	'28 이후
계	15,750,000	12,101,100	1,040,000	2,608,900	-	-	-
국 비	7,500,000	7,500,000	-	-	-	-	-
시 비	7,500,000	3,851,100	1,040,000	2,608,900	-	-	-
기 타	750,000	750,000	-	-	-	-	-

② 추정내용 및 산출 근거

-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 지원 10,000천원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50,000천원 중 일부 지원금 편성
- (시설비및부대비) 부강마실공방 건축(3차분) 공사 등 시설비 200,000천원 요구

- 부강마실공방 3차분('24년) 공사비 200,000천원 필요
 - 총 공사비 2,722,843천원 = [기투자(1,623,791천원)* + 잔여공사비(1,105,052천원)]
 - 잔여공사비 = 1,105,052천원 중 3차분 공사비(벽돌,창호,지붕) 200,000천원 편성필요
 - * 기투자 : 1,623,791천원('23년, 1차분 383,998천원, '24년 2차분 1,233,793천원)

③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해서 '25.1. 위탁 예정인 부강행복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지원 필요
- (시설비및부대비) 건축 잔여 공정 중 외부(벽돌·창호·지붕) 공사를 위한 예산편성 필요

④ 참고자료

- 부강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상도 및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국토부)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2022. 02

국 토 교 통 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III. 마을조합 공공지원

- (공공지원) 공공지원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 조합원 보유 역량 및 의지, 지자체 조례 유무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1) 초기사업비 및 사무공간

- ◇ (지자체 협조사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마을조합 초기사업비 예산 반영, 사무공간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조례 제·개정**

- (초기사업비)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한 조합 대상 도시재생사업비 중 지방비로 초기사업비 3년 간 최대 5천만원 지원 [참조 1]

【 마을조합 초기사업비 】

- (지원원칙) ① 도시재생사업비 중 지방비로 편성, ② 민간경상사업보조 형태로 지급, ③ 초기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④ 운영지원전문기관을 통한 회계관리 필수 등
- (집행원칙) 마을조합 사무국 인건비(총 초기사업 비의 40% 이하 권고), 운영비(초기 사업비의 40% 이상 권고), 건설비
- (지원근거) 도시재생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사무공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무상·경감 사용** 근거를 활용하여 **조합 설립 초기 사무공간 지원***

- 우리 동네 살리기 등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사무공간 무상지원을 위해서는 도시 재생전략계획을 통하여 해당 사업구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필요

※ 마을조합 사무공간 지원에 관한 규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사업(계속)

예산안 : 454쪽, 담당자 : 황태연 균형개발팀장 임현수 (☎300-2731)

1 편성요구액

(단위:천원)

편 성 목 (통계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안			2025년
					계	기정액	추경편성	이 후
계	예산액	6,209,000	3,639,000	783,000	20,000	10,000	10,000	480,000
	지출액	1,551,477	2,285,701	491,504	10,000	1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3,000	10,000	10,000	-	-	-	-
	지출액	2,533	3,328	2,604	-	-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예산액	500,000	1,300,000	544,200	-	-	-	480,000
	지출액	319,223	800,000	478,900	-	-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	-	10,000	20,000	10,000	10,000	-
	지출액	-	-	10,000	10,000	10,000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액	200,000	840,000		-	-	-	-
	지출액	200,000	840,000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액	5,299,000	1,389,000	218,800	-	-	-	-
	지출액	1,023,640	642,373	-	-	-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예산액	41,000	-	-	-	-	-	-
	지출액	-	-	-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예산액	16,000	-	-	-	-	-	-
	지출액	6,081	-	-	-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150,000	100,000	-	-	-	-	-
	지출액	-	-	-	-	-		

2 편성사유

① 사업개요

- 사업구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내용 : 전의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거점시설(3개소) 운영 초기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19.1.1~2025.12.31(7년)
- 사업비 : 20,000천원(시비 100%) ※ 시비 매칭비 미확보분
-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전절차이행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승인	지방보조금	연구용역	행사·축제	민간위탁	출자·출연금
대상/비대상	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미반영	반영	반영	해당없음	반영	해당없음	반영	반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기재정 수요전망 (단위: 천원)]

- ('24) 20,000 ('25) 480,000 ('26) - ('27) - ('28)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당해연도	'25	'26	'27	'28 이후
계	20,000,000	19,500,000	20,000	480,000	-	-	-
국 비	10,000,000	10,000,000	-	-	-	-	-
시 비	10,000,000	9,500,000	20,000	480,000	-	-	-
기 타	-	-	-	-	-	-	-

② 추경내용 및 산출 근거

-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천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의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 증액 (당초:10천만원→ 변경:20천만원)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50,000천원 중 일부 추가 지원금 편성

③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주민공동이용시설 3개소(묘목플랫폼, 전의 이야기센터, 전의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 필요

④ 참고자료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국토부)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2022. 02

국 토 교 통 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III. 마을조합 공공지원

- (공공지원) 공공지원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 조합원 보유 역량 및 의지, 지자체 조례 유무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1) 초기사업비 및 사무공간

◇ (지자체 협조사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마을조합 초기사업비 예산 반영, 사무공간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조례 제·개정**

- (초기사업비)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한 조합 대상 도시재생사업비 중 지방비로 초기사업비 3년 간 최대 5천만원 지원 [참조 1]

【 마을조합 초기사업비 】

- (지원원칙) ① 도시재생사업비 중 지방비로 편성, ② 민간경상사업보조 형태로 지급, ③ 초기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④ 운영지원전문기관을 통한 회계관리 필수 등
- (집행원칙) 마을조합 사무국 인건비(총 초기사업 비의 40% 이하 권고), 운영비(초기 사업비의 40% 이상 권고), 건설비
- (지원근거) 도시재생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사무공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무상·경감 사용** 근거를 활용하여 **조합 설립 초기 사무공간 지원***

- 우리 동네 살리기 등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사무공간 무상지원을 위해서는 도시 재생전략계획을 통하여 해당 사업구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필요

※ 마을조합 사무공간 지원에 관한 규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드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속)

예산안 : 529쪽, 담당자 : 윤종대 국가하천팀장 박무영(☎300-5341)

1 편성요구액

(단위:천원)

편 성 목 (통계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추경편성	2025년 이 후
					계	기정액		
계	예산액	800,000	482,000	3,000,000	4,460,000	4,000,000	460,000	10,058,000
	지출액	800,000	482,000	2,999,432	2,501,588	2,501,588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액	798,000	478,000	2,882,000	4,278,000	3,818,000	460,000	9,689,748
	지출액	798,000	478,000	2,882,000	2,500,000	2,500,000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예산액	-	-	100,000	172,000	172,000	-	348,252
	지출액	-	-	1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부대비)	예산액	2,000	4,000	18,000	10,000	10,000	-	20,000
	지출액	2,000	4,000	17,432	1,588	1,588		

2 편성사유

① 사업개요

- 사업구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1.81km, 교량 2개소 등(소정면 대곡리)
- 사업기간 : 2021.1.1~2026.8.31
- 사 업 비 : 18,800,000천원(국비 9,000,000천원, 시비 7,570,000천원, 기타 2,230,000천원)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사전절차이행여부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승인	지방보조금	연구용역	행사·축제	민간위탁	출자·출연금
대상/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미반영	반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기재정 수요전망 (단위 : 천원)]

- ('24) 4,460,000 ('25) 6,000,000 ('26) 4,058,000 ('27) - ('28)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당해연도	'25	'26	'27	'28 이후
계	18,800,000	4,282,000	4,460,000	6,000,000	4,058,000	-	-
국 비	9,000,000	1,741,000	2,230,000	3,000,000	2,029,000	-	-
시 비	7,570,000	2,541,000	-	3,000,000	2,029,000	-	-
기 타	2,230,000	-	2,230,000	-	-	-	-

※ '24년 지방채 2,230,000천원

< 세부 사업내용 >

통계목	사업량	소요액(천원)	비고
계		4,460,000	
시설비	- 축제 및 호안정비 L=1.03km - 교량(L=40m, B=2.5m) 1개소 등 - 보상비 27필지	4,278,000	- 설계('21.3.~'22.12.) - 지구지정('21.4.)
감리비	- 공사감리 1식	172,000	- 착공('23.8.)
시설부대비	- 용역 조달수수료 및 감독여비 등	10,000	- 준공('26.8.)

② 추경내용 및 산출근거

- 조속한 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금 추가 편성(460,000천원)

③ 편성 필요성 및 증감사유

- **(편성 필요성)** 맹곡천은 '20.8월 호우피해(제방유실 420m, 교량 유실 1개소) 발생 하는 등 피해 위험이 많은 하천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21.4.30. 침수 위험 “가” 등급)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하는 사업임

- **(증액사유)**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보상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 증액 편성

※ 증액 사업비는 사업 주관부처인 행안부와 협의하여 관내 다른 지구(읍내지구) 사업비를 조정(감액) 및 활용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		
	총 사업비	기투자	'24년 사업비			'24년 사업비			'24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읍내	29,400	800	1,200	600	600	740	370	370	감 460	감 230	감 230
맹곡	18,000	3,482	4,000	2,000	2,000	4,460	2,230	2,230	증 460	증 230	증 230

④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공문('24년 2분기 재해예방사업 지구간 사업비 변경 승인 통보)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2분기 재해예방사업 지구간 사업비 변경 승인 통보

1. 관련 근거

- 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1950('23.12.29, '24년 재해예방사업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통보) 호
- 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361('24.1.19, '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및 조기추진 철저) 호
- 다.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1295('24.3.27, '24년 2분기 재해예방사업 지구간 사업비 변경계획 제출) 호
- 라. 울산광역시 자연재난과-5520(2024.4.1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난과-5016(2024.4.11.)호, 경기도 북부안전특별점검단-3965(2024.4.26.)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6078(2024.5.5.)호, 충청북도 자연재난과-8394(2024.4.29.)호, 충청남도 자연재난과-5896(2024.4.26.)호, 전라북도 자연재난과-4785(2024.4.29.)호, 전라남도 자연재난과-10877(2024.5.7.)호, 경상북도 자연재난과-9766(2024.4.26.)호, 경상남도 자연재난과-6475(2024.4.29.)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6873(2024.4.23.)호

2. '24년 재해예방사업 지구간 사업비 변경 요청에 대해 시·도내 시·군·구간, 시·군·구내 변경을 승인하오니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업비가 증액된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확보계획서를 5.24(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간 변경 요청건에 대한 검토는 상반기내 재조정 예정

붙임 1. 사업비 지구간 변경(검토) 내역 1부.

2. '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변경) 세부내역 1부(별송)

3. '24년 지방비 확보계획서(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관인생략

수신자 울산광역시장(자연재난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자연재난과장), 경기도지사(북부안전특별점검단), 강원특별자치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북도지사(재난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연재난과장)

주무관 류예준 과학기술서기관 원종일 재난경감과 과 전결 2024. 5. 16. 박정호

협조자

시행 재난경감과-2165 (2024. 5. 16.) 접수 자연재난과-6625 (2024. 5. 16.)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3층 304호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5152 팩스번호 044-205-8931 / ryu1602@korea.kr / 대국민 공개

자연재해위험개선키구 정비사업

시도	지구명	신 계 속 마 무 리	당초						변경						증감						사유
			총사업비	기투자	'24년 사업비			'25년	총사업비	기투자	'24년 사업비			'25년	'24년 사업비			'25년			
					계	국비	지방비				이후	계	국비		지방비	이후	계		국비	지방비	
세종	음내	계속	29,400	800	1,200	600	600	27,400	29,400	800	740	370	370	27,860	- 460	- 230	- 230	460	국가철도공단 협의에 따른 실시설계 준공 지연 (검토) 시군내 조정가능		
세종	영국	계속	18,000	3,482	4,000	2,000	2,000	10,518	18,000	3,482	4,460	2,230	2,230	10,058	460	230	230	- 460	조속한 사업수행을 위한 토지보상금 추가확보 (검토) 시군내 조정가능		

4

토석채취허가지 대행 복구사업(계속)

예산안 : 533쪽, 담당자 : 이충훈 산지관리팀장 이용우(☎300-4431)

1 편성요구액

(단위:천원)

편 성 목 (통계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2025년 이 후
					계	기정액	추경편성	
계	예산액	-	-	-	3,012,583	3,012,583	-	-
	지출액	-	-	-	20,900	20,900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액	-	-	-	2,967,583	2,967,583	-	-
	지출액	-	-	-	20,900	20,900	-	-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예산액	-	-	-	45,000	45,000	-	-
	지출액	-	-	-	-	-	-	-

2 편성사유

① 사업개요

- 사업구분 : 자체
- 사업내용 : 한림개발 토석채취허가지 기간만료 후 복구 미이행으로 허가 시 예치된 복구증권으로 복구비를 청구하여 市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 추진
- 사업기간 : 2024.1.1~2027.12.31
- 사 업 비 : 3,012,583천원(부담금 100%) ※ 토석채취허가 시 예치된 복구비 활용
- 추진근거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41조
- 사전절차이행여부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승인	지방보조금	연구용역	행사·축제	민간위탁	출자·출연금
대상/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미반영	반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기재정 수요전망 (단위 : 천원)]

- ('24) 3,012,58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당해연도	'25	'26	'27	'28 이후
계	3,012,583	-	3,012,583	-	-	-	-
국 비	-	-	-	-	-	-	-
시 비	-	-	-	-	-	-	-
기 타	3,012,583	-	3,012,583	-	-	-	-

② 추정내용 및 산출근거

- 한림개발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복구미이행에 따른 대행복구 추진
 - 대행복구사업 설계 및 시공(시설비) 2,967,583,000원 × 1개소 = 2,967,583,000원
 - 대행복구사업 감리(감리비) 45,000,000원 × 1개소 = 45,000,000원

③ 편성 필요성 및 증감사유

- 한국골재협회에 허가 시 예치한 복구증권으로 복구비 청구하여 지급 받았음
 -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지급 받은 복구비('23.8.7)로 '2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 한림개발 토석채취허가지 대행 복구사업은 사업기간이 '24 ~ '27년까지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함
- ※ 「산지관리법」 제41조 :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구설계서를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하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한 후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위치도 [전동면 봉대리 산8-5 외]



현장사진

④ 참고자료

-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복구 대집행 계획[산림공원과-6251(2024.3.15.)]

참고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복구 대집행 계획

등록번호	산림청청과-8251	주무관	산지관리팀장	산림청청과장	환경복지국장	경정부서장
등록일자	2024. 8. 15.	이승준	이동우	김민석	정영석	김하균
발령일자	2024. 8. 15.					
공제구분	비율제(5.8)					
		필요자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복구 대집행 계획

-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복구 계획
- ▶ (기 간) '24. 03. ~ '27. 11월
 - ▶ (장 소) 전동면 봉대리 산8-5 외 3필지
 - ▶ (면 적) 57,528㎡
 - ▶ (복구비) 30억 원(토석채취허가 복구 보증금)

세종특별자치시
S E J O N G [산림공원과]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복구 대집행 계획

- ◆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를 복구의무자(한림개발)가 복구하지 않아 대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하고자 함

I 추진배경

- “토석채취허가기간 만료지역”을 복구의무자인 한림개발(주)이 복구를 장기간 미 이행하여 대집행 필요
 - 한림개발은 파산된 상태로 복구 능력 상실,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였으나 복구비(46억 원) 미 예치
 - ※ 「산지관리법」 제41조 제1호(복구의 대집행 등)
- 한국골재협회(복구비 보증업체)에서 자진 복구하겠다고 하여, 복구대행자로 지정하였으나 돌연 포기('23.7.24.)
- 따라서 최초 허가 시 예치된 복구비 증권(골재협회, 30억 원)을 청구하여 복구 대집행 하고자 '24년 본예산에 편성
 - ※ 한국골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중(복구비 지급 지연)

II 복구대상지 현황

- (위 치)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산8-5번지 외 3필지
- (면 적) 70,598㎡(채취구역 52,545㎡, 진입로 4,983㎡, 완충구역 13,070㎡)
- (채취수량) 496,553㎡(쇄골재용 및 토목용)
- (허가기간) '09.8.21. ~ '18.12.31.
- (수허가자) 한림개발(주) 대표 한영수
 - ※ 한림개발(주)에서 복구비 보증금(한국골재협회) 예치(30억 원)

III 그동안 추진경과

- 토지사용 승낙 철회로 2차 허가지(한림개발)* 위소('19.5.20.)
 - * (개요) 전동 봉대 산4 등, '16.12.20~'26.1.31, 118,734㎡, 쇄골재용 및 토목용
- 「허가위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한림개발, '19.6.11.)
-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한림개발(주) 사건 중지(대전지법, '20.2.12.)
- “행정소송” 원고청구 기각(1~3심, '20.7~'21.5.), 확정중명원 배급('21.7.16.)
- 복구명령(市→한림개발, '21.7.28), 복구비 미 예치 및 복구포기('22.12월)
- 복구비 지급 요청(市→골재협회, 3회, '22.12~'23.3.)
- 복구대행자 지정(골재협회, '23.4.20.), 복구 포기('23.7.24.)
- 복구비 지급('23.8.7.), '24년도 본예산 편성('23.11~'24.1월)

IV 문제점

- 계단식 토석채취를 하지 않아 급경사지 형성, 허가지 외 및 완충구역 훼손, 지하 불법채취 구역 답수*로 현지에 적합한 복구가 어려움
 - * 약 40만톤의 답수량을 배수처리 하여야 현지복구 가능
- 따라서 고도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서 복구를 하여야 하며 지하 성토용 토사(약 40만㎥) 필요
- 복구비가 부족하여 예산 결감(토사 무상 수급 등)이 필요하며 진입로 차단기 설치 및 장비(차량, 크라셔 등)가 현지에 방치되어 있음



• 급경사지 형성 및 우수 저수

• 차량, 크라셔 등 현장 방치

V 복구 계획

- (현지역건) 바닥부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허가지 인접구역에 대한 공사(지반경리 등) 실행
 - ※ 복구 보증금의 복구범위는 허가지(57,528㎡)으로 제한
- (설 계) ① 적지복구를 위하여 물웅덩이 배수 후 복토 ② 사면 안정각을 유지하여 낙석을 방지하고 상부 녹화 실시 등

복구공사 개요

- ▶ (사 업 명) 한림개발 토석채취허가지 대행 복구사업
- ▶ (장소/면적) 전동 봉대 산8-5 외 3 / 57,528㎡(채취구역 52,545, 진입로 4,983)
- ▶ (예 산 액) 30억 원(복구비 보증금)
- ▶ (복구기간) '24.3~'27.11월

- (복구기준) 급경사지 사면은 복구기준*대로 복구가 불가하여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완화** 필요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별표6]
 - ** 비탈면 수직높이 15m이하로 5m이상 소단설치, 비탈면 기울기 1:0.5 이하
- (감라시공) 전문기술을 보유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 있는 업체 선정
- (사전조치) ① 복구대상지 입구 진입차단기 및 기존 시설물(장벽) 철거
 - 고문번호사 법률 자문 및 한림개발(주) 협의
- ② 성토용 토사를 무상 또는 저가 확보 필요

법률 자문결과

- ▶ 변 호 사 : 이지아(현안, 市 고문번호사)
- ▶ 자문일자 : 2회('24.3.7, 3.11.)
- ▶ 변호사 의견
 - 「행정대집행법」 적용 시 강제철거(진입차단기, 시설물) 가능
 - 따라서 현재 복구계획으로는 어려우며, 한림개발(주) 측과 협의하여 진입 필요
- * 「행정대집행법」 적용 가능여부는 별도 자문 요청 시 검토

5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계속)

예산안 : 752쪽, 담당자 : 신익호 친환경종합타운팀장 이향숙 (☎300-4751)

① 편성요구액

(단위:천원)

편 성 목 (통계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2025년 이 후
					계	기정액	추경편성	
계	예산액	208,000	85,500	224,000	24,503,852	20,015,000	4,488,852	139,186,148
	지출액	768,034	155,241	26,933	20,043,116	20,043,116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액	120,000	-	-	24,488,852	20,000,000	4,488,852	
	지출액	731,826	130,750	-	20,036,024	20,036,024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37,000	82,500	-	-	-	-	
	지출액	33,045	20,992	13,806	3,877	3,877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액	3,000	-	-	-	-	-	
	지출액	1,017	621	-	-	-		
여비 (국내여비)	예산액	5,000	3,000	-	-	-	-	
	지출액	2,146	395	-	2,385	2,385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액	24,000	-	-	15,000	15,000	-	
	지출액	-	2,483	13,127	830	83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예산액	19,000	-	-	-	-	-	
	지출액	-	-	-	-	-		
여비 (국제화여비)	예산액	-	-	64,000	-	-	-	
	지출액	-	-	-	-	-		
일반보전금 (민간인국외여비)	예산액	-	-	160,000	-	-	-	
	지출액	-	-	-	-	-		

② 편성사유

① 사업개요

- 사업구분 : 기타재원(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 사업내용 : 市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소각시설(400톤/일), 음식물자원화시설(80톤/일), 주민편익시설 등
- 사업기간 : 2020년 ~ 2030년
- 사 업 비 : 166,207,500천원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중으로 총 사업비(국비보조 등)는 추후 확정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등

○ 사전절차이행여부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승인	지방보조금	연구용역	행사·축제	민간위탁	출자·출연금
대상/비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미반영	반영	해당없음	미반영	반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기재정 수요전망 (단위 : 천원)]

- ('24) 24,503,852 ('25) 10,000,000 ('26) 20,000,000 ('27) 30,000,000 ('28) 30,000,000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이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A+B)	당 초 (A)	추 경(B)				
					1회	2회			
기타 (부담금)	166,207,500	2,517,500	24,503,852	20,015,000	-	4,488,852	10,000,000	20,000,000	109,186,148

② 추경내용 및 산출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편입지역 보상비 등 4,488,852천원

- 친환경종합타운 편입지역 보상비 중 미지급 보상비 4,138,852천원

※ 토지(7필지) 60,363㎡, 건축물(11동) 3,757㎡, 지장물 등 총 보상비 24,138,852천원 중 20,000,000천원 지급

- 친환경종합타운 추가 편입지역 보상비 350,000천원

※ 추가 편입지역 토지(5필지) 1,524㎡, 보상비(약 300,000천원) 및 관련 수수료 등

③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 친환경종합타운 편입지역 미지급 보상비(4,138,852천원) 및 추가 편입지역(5필지) 보상비, 수수료 등(350,000천원)

④ 참고자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LH납부)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회('20. 12.09.)	2회('21. 02.01.)	3회('22.02.03.)년)	4회('23.01.31.)
납부금액	166,021,776	2,000,000	40,000,000	60,000,000	64,021,776

3. 직종별 정원표

3

직종별 정원표

(2024. 7. 30. 기준)

부서명	총계	정무	일반직													전문경력관	연구	지도	소방	별정
			1급	2급	2~3급	3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2,609	4	0	0	2	10	1	67	299	486	580	366	117	8	39	35	585	10		
공보관	16							1	4	3	6	1		1						
운영지원과	58	1						2	10	13	18	8						6		
투자유치단	10							1	3	3	2	1								
기획조정실	120						1	5	28	36	31	15	1	2				1		
시민안전실	83				1			4	14	22	19	17	4	2						
자치행정국	126					1		6	24	37	33	20	3		2					
경제산업국	86					1		5	21	23	22	12	2							
도농상생국	86					1		4	18	27	25	11								
문화체육관광국	63					1		4	15	16	17	8	1		1					
보건복지국	122					1		6	27	31	29	24	4							
도시주택국	104					1		4	23	26	24	23	3							
교통국	79					1		4	15	20	24	13	2							
환경녹지국	117					1		5	22	25	28	32	4							
충청북도농업기술원	10					1			2	3	4									
소방본부	77																77			
의회사무처	70				1			4	11	28	19	2		1			1	3		
보건환경연구원	53					1		1	3	6	6				36					
보건소	74							1	4	24	33	9	3							
농업기술센터	42									1	1	3		2		35				
조치원소방서	236																236			
세종소방서	270																270			
시설관리사업소	47							1	3	10	17	12	4							
공공건설사업소	19							1	2	4	4	6	2							
도로관리사업소	21							1	3	4	4	7	2							
시립도서관	32							1	3	3	6	16	3							
차량등록사업소	12							1	2	2	3	2	2							
국회세종위원회사무소	5							1	1	1	1	1								
상하수도사업소	42							1	3	14	12	9	3							
감사위원회	34	1						1	7	12	12						1			
자치경찰위원회	9	2							2	2	2	1								
조치원읍	68							1	4	14	21	20	8							
연기면	15								1	3	7	4								
연동면	17								1	3	7	6								
부강면	19								1	3	9	4	2							
금남면	22								1	3	11	5	2							
장군면	19								1	3	9	4	2							
연서면	21								1	5	8	6	1							
전의면	21								1	3	9	6	2							
전동면	18								1	3	6	6	2							
소정면	15								1	3	6	3	2							
한솔동	18								1	3	8	4	2							
도담동	18								1	3	6	4	4							
아름동	34							1	3	8	15	4	3							
종촌동	17								1	3	6	4	3							
고운동	18								1	3	6	4	4							
보람동	19								1	3	7	4	4							
새롬동	17								1	3	5	4	4							
대평동	16								1	3	5	3	4							
소담동	16								1	3	5	3	4							
다정동	17								1	3	5	3	5							
해밀동	15								1	3	4	3	4							
반곡동	16								1	3	5	3	4							
어진동	15								1	3	4	3	4							
나성동	15								1	3	4	3	4							

※ 국가직 3명(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제외

4. 용역심의위원회 결과

용역심의위원회 임시회의 결과보고

❖ 2024년도 제2회 추경 연구 용역(4건/1,612백만원)의 추진여부 심의를 위해 용역심의위원회 임시회의(서면)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회의개요

- (기간/방법) '24. 7. 8.(월) ~ 7. 10.(수) / 서면심의
- (심의위원) 위원장(행정부시장) 등 25명 중 14명 심의(임명 4, 위촉 10)
- (심의내용) '24년도 제2회 추경 연구용역(4건)

<참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결과 : 원안가결(4건)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용역명	요구액	심의결과
계	4개 부서	총 4건	㉔ 30 ㉕ 1,582	원안가결 4
1	주택과	농촌마을유희자원조사 (농촌빈집실태조사)	㉔ 30 ㉕ 30	원안 가결 (원안 14)
2	문화유산과	박상근류 가야금 산조 무형유산 학술조사	㉕ 22	원안 가결 (원안 11, 조건부 1, 부결 2)
3	미래수도 기반조성과	조치원역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㉕ 1,500	원안 가결 (원안 8, 조건부 4, 부결 2)
4	물관리정책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㉕ 30	원안 가결 (원안 12, 조건부 1, 부결 1)

※ 사업비는 요구액 기준임

□ 행정사항

-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예산담당관 및 소관부서) : 7.12.(금) 限

붙임

용역별 주요 심의의견(단순 동의 의견 제외)

연번	부서명	연구용역명	심의결과	주요 심의의견
1	주택과	농촌마을유희 자원조사	원안 가결	■ 소유자 의견조사시 빈집의 활용 방안(ex 전면 철거, 리모델링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같이 진행 필요 ■ 기존 연구결과(2022년 세종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등 수립용역)의 적극 활용 필요함. 다만, 이번 용역과 지난 연구용역의 차별성을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음
2	문화 유산과	박상근류 가야금 산조 무형유산 학술조사	원안 가결	■ 보유자의 해외 이주로 현황 자료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미래 수도기반 조성과	조치원역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원안 가결	■ 제한경쟁에 대한 명확한 요건 제시 필요 ■ 용역의 시급성 및 중요성은 공감하나 과업 범위를 고려할 때 용역 금액 과다, 재검토 필요 ■ 단순히 철도지하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함이 아니라 주변 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 필요 ■ 상부 개발이익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의 수익성 확보가 관건임, 타 지자체(서울, 대전 등) 선도사업의 수익성 확보추이를 보면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함 ■ 수행기간 연장을 통해 심층분석 필요
4	물관리 정책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원안 가결	■ 유사 용역 사례*를 고려할 때 비용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보완이 필요함 * [경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20백만원 / 2022년)

5.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5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42건)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안			심의 결과
			계	최종예산액 (본예산+1추)	추경요구액	
자치행정과	조치원읍 서창1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20,000	0	2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금남면 도암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30,000	18,700	11,3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금남면 두만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20,000	0	2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연서면 봉암1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0,000	0	1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연서면 와촌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20,000	0	2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연서면 청라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5,000	0	15,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전동면 송성1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0,000	0	1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 회관, 경로당) 긴급보수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30,000	0	3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90%)	민간경상사업 보조	50,818	72,400	△21,582	원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보조율미적용대상)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27,200	36,000	△8,800	원안
도농정책 기획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91%)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00	10,000	1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91%)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00	0	2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농업정책과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60,000	40,000	2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부서	사업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안			심의 결과
			계	최종예산액 (본예산+1추)	추경요구액	
우리농산물 유통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보조90%)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45,196	53,208	△8,012	원안
	학교급식 지원사업	교육기관에대 한보조	670,402	786,931	△116,529	원안
체육진흥과	체육회운영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1,589,159	1,579,159	1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회원종목단체 실무자 교육을 위한 워크숍	민간경상사업 보조	5,000	0	5,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184,700	150,000	34,7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시비100%)	민간경상사업 보조	22,000	14,000	8,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금남 남산영당 화장실 조성사업(100%)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200,000	0	20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복지정책과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50,550	41,550	9,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국외전적지 순례	민간경상사업 보조	30,000	0	3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보훈단체 운영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214,000	211,000	3,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20,000	0	2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인구여성 가족과	24년 저출산 극복 유모차 걷기대회 행사	민간행사사업 보조	40,000	0	40,000	미반영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추가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80,262	76,158	4,104	원안
	아동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125,510	116,560	8,950	원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58,575	53,310	5,265	원안

부서	사업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안			심의 결과
			계	최종예산액 (본예산+1추)	추경요구액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331,271	302,116	29,155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경로당 활성화 (노인 지역봉사활동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310,200	280,800	29,4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장애인단체 운영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475,298	449,964	25,334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2,330,755	2,203,963	126,792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보건정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시비100%))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75,042	82,190	△7,148	원안
교통정책과	마을택시 운영	운수업계보조	553,000	500,000	53,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택시카드수수료 및 모뎀통신료 (100%)	운수업계보조	322,907	312,481	10,426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	32,576,815	25,624,794	6,952,021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아스터대학과정 교육(100%)	민간경상사업 보조	12,632	12,480	152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양파 정식작업 생력화 시범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38,500	0	38,5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자치경찰 위원회	순찰차량 구입 (다정, 어진지대)	민간자본사업 보조	90,000	45,000	45,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순찰차량 경광등 교체	민간자본사업 보조	28,800	0	28,8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자율방범대초소 CCTV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	18,060	0	18,060	원안
	신안지대 초소 이전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10,000	0	10,000	예산부서 실무심의반영

6.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 7. 지방채현황 및 상환계획 참조

7. 지방채현황 및 상환계획

17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

17-1

지방채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말 잔 액	2023년도 운용내역		2023년말 잔 액	2024년도 운용계획		2024년말 예 상 액
		발 행	상 환		발 행	상 환	
지 방 채(A+B+C+D)	369,493,840	38,161,490	38,857,700	368,797,630	82,945,460	44,755,805	406,987,285
일반회계(A)	114,736,125	750,000	5,136,250	110,349,875	36,616,000	5,417,500	141,163,375
차 입 금	114,736,125	750,000	5,136,250	110,349,875	36,231,000	5,417,500	141,163,375
특별회계(B)	44,195,000	-	-	44,195,000	10,385,000	2,699,000	51,881,000
차 입 금	44,195,000	-	-	44,195,000	10,385,000	2,699,000	51,881,000
기 금(C)	210,562,715	37,411,490	33,721,450	214,252,755	36,329,460	36,639,305	213,942,910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증권)	210,562,715	37,411,490	33,721,450	214,252,755	36,329,460	36,639,305	213,942,910
자치단체보증채무(D)	-	-	-	-	-	-	-

17-2 지방채 상환계획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말 잔 액	연 도 별 상 환 계 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총 상환액(a+b+c+d)	368,797,630	44,755,805	56,232,250	62,984,305	63,237,525	141,587,745
일반회계(a)	110,349,875	5,417,500	5,879,100	9,219,100	14,094,100	75,740,075
차 입 금	110,349,875	5,417,500	5,879,100	9,219,100	14,094,100	75,740,075
특별회계(b)	44,195,000	2,699,000	2,699,000	4,549,000	5,769,000	28,479,000
차 입 금	44,195,000	2,699,000	2,699,000	4,549,000	5,769,000	28,479,000
기 금(c)	214,252,755	36,639,305	47,654,150	49,216,205	43,374,425	37,368,670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증권)	214,252,755	36,639,305	47,654,150	49,216,205	43,374,425	37,368,670
자치단체보증채무(d)	-	-	-	-	-	-

※ 본청 회계 간 내부거래 제외

참고 연도별 차입 및 상환계획

(2020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발행액	연 도 별 상 환 계 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총 계(a+b)	73,500,000	3,862,500	3,862,500	9,052,500	9,052,500	43,235,625
일반회계(a)	55,000,000	3,862,500	3,862,500	7,202,500	7,202,500	28,435,6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6,100,000	762,500	762,500	762,500	762,500	1,715,6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9,800,000	-	-	980,000	980,000	7,84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기존 보상	14,200,000	-	-	1,420,000	1,420,000	11,360,000
금남근린공원 조성	6,400,000	-	-	640,000	640,000	5,120,000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1,000,000	-	-	100,000	100,000	800,000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3,5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2,100,000	420,000	420,000	420,000	420,000	-
세종시립도서관	3,60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	1,600,000	320,000	320,000	320,000	320,000	-
공공급식센터 건립	3,200,000	640,000	640,000	640,000	640,000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00,000	-	-	200,000	200,000	1,600,000
특별회계(b)	18,500,000	-	-	1,850,000	1,850,000	14,800,000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18,500,000	-	-	1,850,000	1,850,000	14,800,000

구 분	2021년 발행액	연 도 별 상 한 계 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총 계(a+b)	69,850,000	1,555,000	1,555,000	2,775,000	7,650,000	56,261,250
일반회계(a)	57,650,000	1,555,000	1,555,000	1,555,000	6,430,000	45,281,250
대교천 하천정비사업	7,800,000	-	-	-	780,000	7,020,000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2,500,000	-	-	-	250,000	2,250,000
내창천 재해예방사업	1,500,000	-	-	-	150,000	1,350,000
세종 테크노파크 조성	3,005,000	-	-	-	300,500	2,704,500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5,403,000	-	-	-	540,300	4,862,7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보상	8,720,000	-	-	-	872,000	7,848,000
조치원 제2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10,022,000	-	-	-	1,002,200	9,019,800
금남근린공원 조성	4,000,000	-	-	-	400,000	3,600,000
동서연결도로 확충	11,700,000	1,180,000	1,180,000	1,180,000	1,760,000	5,220,000
도시바람길 숲 조성	3,000,000	375,000	375,000	375,000	375,000	1,406,250
특별회계(b)	12,200,000	-	-	-	1,220,000	10,980,000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12,200,000	-	-	-	1,220,000	10,980,000

(2022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발행액	연 도 별 상 환 계 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총 계(a+b)	16,153,000	2,699,000	3,160,600	3,160,600	3,160,600	3,972,200
일반회계(a)	2,658,000	-	-	-	461,600	1,273,200
장기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보상	2,308,000	-	461,600	461,600	461,600	923,200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350,000	-	-	-	-	350,000
특별회계(b)	13,495,000	2,699,000	2,699,000	2,699,000	2,699,000	2,699,000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13,495,000	2,699,000	2,699,000	2,699,000	2,699,000	2,699,000

(2023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발행액	연 도 별 상 환 계 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총 계(a+b)	750,000	-	-	-	-	750,000
일반회계(a)	750,000	-	-	-	-	750,000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750,000	-	-	-	-	750,000
특별회계(b)	-	-	-	-	-	-
	-	-	-	-	-	-

구	분	2024년 발행계획	연 도 별 상 환 계 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총 계(a+b)		46,616,000	-	-	-	-	46,616,000
일반회계(a)		36,231,000	-	-	-	-	36,231,000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키구 정비		2,383,000	-	-	-	-	2,383,000
덕현천 자연재해위험개선키구 정비		1,800,000	-	-	-	-	1,800,000
월하 자연재해위험개선키구 정비		1,250,000	-	-	-	-	1,250,000
삼성 자연재해위험개선키구 정비		900,000	-	-	-	-	900,000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전환사업)		3,300,000	-	-	-	-	3,300,000
문주천 재해예방사업(전환사업)		9,243,000	-	-	-	-	9,243,000
월하천 재해예방사업(전환사업)		5,200,000	-	-	-	-	5,200,000
내창천(봉산지구) 재해예방사업 (전환사업)		1,620,000	-	-	-	-	1,620,000
조천(신방지구) 재해예방사업(전환사업)		500,000	-	-	-	-	500,000
노장천 재해예방사업(전환사업)		500,000	-	-	-	-	500,000
미집행 녹지조성		3,500,000	-	-	-	-	3,500,000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4,750,000	-	-	-	-	4,750,000
소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85,000	-	-	-	-	685,000
읍내 자연재해위험개선키구 정비		370,000	-	-	-	-	370,000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키구 정비		230,000	-	-	-	-	230,000
특별회계(b)		10,385,000	-	-	-	-	10,385,000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10,385,000	-	-	-	-	10,385,000